

시정권고 제도의 운용 성과와 전망 : 2022년 시정권고 분석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서울제중재부 중재위원

1. 시작하면서

위험사회로 진입할수록 각종 권익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시스템을 촘촘하게 정비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라 한다)의 시정권고 제도는 다른 피해구제제도의 기본 철학인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보완하여 피해당사자가 아닌 언중위가 주체가 되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이나 사회적 법익 침해 사례를 부드러운 권고 형태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예로 2022년 11월 13일 시민언론 민들레 인터넷신문이 사회면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였다. 이런 보도에 대하여 언중위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보도는 희생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반하였으므로 대상보도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희생자의 성명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

1) 해당 기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보도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들의 성명을 공표하였다. 개인의 성명은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당사자(망인)의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 없는 공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공중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이나 경위 및 전후 사정(사망자 수색이나 신원확인)이 종료된 후의 공표, 보도 후 일부 유족의 비공개요청 등을 종합해 상호 비교형량하여 본 결과, 언중위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는 기본권의 보호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희생자들의 명단 공표는 위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32조 제1항 및 언중위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권고사항을 결정하였다.

정을 내렸고¹⁾, 해당 언론사의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²⁾

언론보도로 개인이나 사회의 인격권 침해를 다양한 측면에서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온 언중위의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성과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정권고 제도는 그동안의 단순 ‘권고’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2년부터 정부광고 집행을 위한 핵심지표에 시정권고 건수를 활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언론사들의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³⁾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해였다. 본 글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시정권고 제도의 운용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2023년부터 시정권고 건수가 인쇄매체 외에도 인터넷신문과 방송 등과 같은 플랫폼에 정부광고 핵심지표 확대 적용 등을 앞두고 시정권고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현황 진단

가. 2022년 현황 진단

2022년 한 해 동안 언중위가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내린 언론보도는 모두 1,239건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역대 가장 많은 시정권고 건수를 기록한 2021년 1,291건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갈수록 매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유튜브(YouTube)와 같은 소셜미디어 공간을 통해 자극적인 뉴스로 수용자의 주목을 받으려는 언론계의 행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향후 시정권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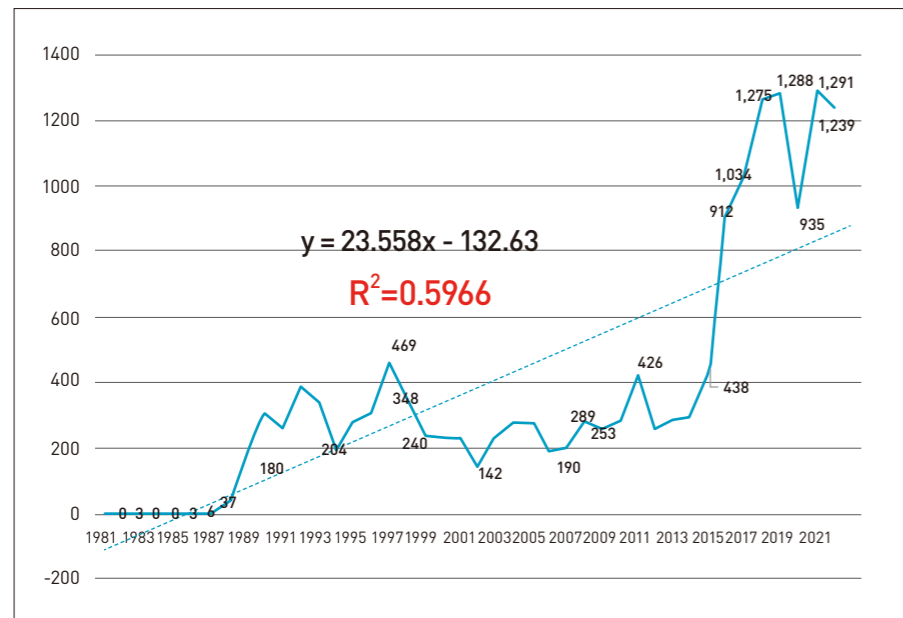
시정권고 제도가 시작된 1981년부터 2022년까지 시정권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제도 초창기 1981년부터 1989년까지는 관련 기준, 대상과 절차의 미비로 언

2) 재심청구 기각 이유로 47자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 원심결정은 유족의 동의 여부를 유일한 판단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 내지 공공의 이익과 유족(희생자)의 기본권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였고, 사회적 대참사라고 할지라도 희생자 명단은 여전히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며 민주주의 발전과 기본권 인식의 향상에 따라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특히 각 생명 전체)이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2) 정부 당국이 희생자 명단을 알려주지 않아 유가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삭제 요구를 받은 명단을 삭제했다는 주장은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심결정을 반복할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며, 아직 삭제 요구가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유족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더욱이 그 동의 있음을 재심청구인이 적극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개인정보보호법」이 사망자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망자 명단 공개로 유족의 사생활이나 명예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기자협회의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언론 자체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였을지라도 그 경우 반드시 각 사망자 생명 전체를 보도해야 하는지는 의문인 점, 마지막으로 (4) 특히 이 사건 보도와 같은 각 희생자 생명 전체의 공개가 반드시 유족의 공동대응,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의 마련 및 정부의 참사수습과 처리과정의 부실, 무능, 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케 하며 그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에 대해 위협이나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재심 기각 근거로 제시하였다.

3) 시정권고를 받은 뉴스통신이나 인터넷신문과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을 수용률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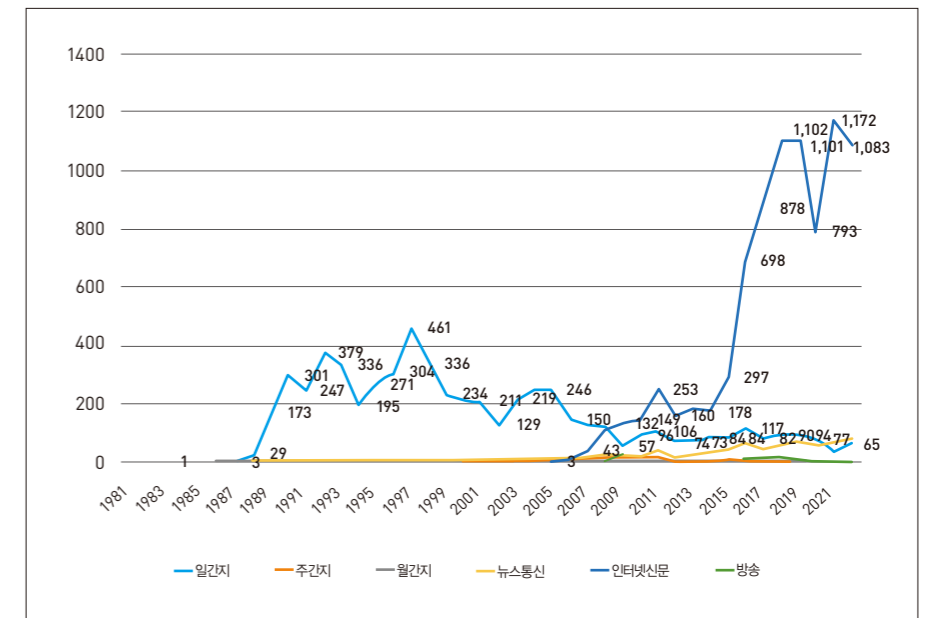
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미미했다. 1989년에 시정권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된 후 2015년까지 평균 300건 정도의 시정권고 빈도를 보이다 2016년부터 큰 증가세를 보이게 된다. 그 이후 매해 평균 1천 건 이상의 시정권고가 제안되었고 코로나19가 정점이던 2021년 1,291건으로 역대 최고의 시정권고 건수를 기록하였다.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평균 1,200건 이상의 시정권고를 진행하였다. 향후 추세의 기울기를 예측하는 R²도 0.5966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림 1〉 언론중재위원회 연도별 시정권고 빈도 그래프(1981년~2022년) 단위: 건수



2022년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언론보도 1,239건을 매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인터넷신문이 1,083건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언론사 유형별 시정권고 변화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초반 19년간은 ‘일간지’ 유형이 압도적으로 시정권고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인터넷신문이 언론중재법상 언론매체의 하나로 편입된 지 4년만인 2009년부터 ‘인터넷신문’ 유형이 부동의 시정권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신문이 많아지고 매체 간 경쟁 심화, 열악한 취재환경과 법률 지식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극성이었던 2021년에는 ‘인터넷신문’ 비중이 전체 시정권고의 90.8%인 1,172건을 차지하였다.

〈그림 2〉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그래프(1981년~2022년) 단위: 건수



2022년 중앙일간지 시정권고는 21건(1.7%), 지역일간지의 경우 44건(3.6%)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은 전체 인터넷신문 시정권고의 36%에 해당하는 388건이 시정권고를 받고 있다. 외형적으로 ‘인터넷신문’이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나 전통언론과 관련 없는 ‘순수’ 인터넷신문은 56%에 해당하는 695건이 시정권고를 받았고,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닷컴계열은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453건을 차지하여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들이 인터넷언론으로의 출구전략을 시도하는 사업상 다각화 전략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

언론사별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정권고 상위 10개 언론사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인터넷신문인 〈인사이트〉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인터넷 국민일보〉(2019년), 〈위키트리〉(2020년), 〈조선닷컴〉(2021년), 〈디스패치뉴스〉(2022년)가 이었다. 이러한 상위 10개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전체 시정권고 대상 언론사들 가운데 18.9%(2019년), 20.1%(2020년), 19.6%(2021년), 21.3%(2022년) 등과 같이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최근 4년간 시정권고 상위 10개 언론사가 전체 시정권고의 평균 20%를 차지하여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 시정권고 상위 10개 언론사 빈도와 비율(2019년~2022년)

단위: 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위 10개 매체	인사이트	40	인사이트	43	인사이트	32	인사이트
	인터넷 국민일보	29	위키트리	25	조선닷컴	29	디스패치뉴스	35
	위키트리	25	인터넷 국민일보	18	위키트리	28	살구뉴스	32
	인터넷 세계일보	23	인터넷 세계일보	17	디스패치뉴스	26	포스트썬어	30
	뉴스코리아	22	뉴스코리아	16	투스타뉴스	26	뉴스코리아	29
	디스패치뉴스	19	디스패치뉴스	16	e머니투데이	24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2
	동아닷컴	18	헤럴드POP	16	인터넷 세계일보	24	위키트리	20
	뉴스스(Newsis)	17	조선닷컴	13	인터넷 한국경제	22	인터넷 헤럴드경제	20
	아시아뉴스통신	17	뉴스스(Newsis)	12	인터넷 매일신문	21	인터넷 세계일보	18
	인터넷중앙일보	17	부산닷컴	12	인터넷 이데일리	21	조선닷컴	18
	투스타뉴스	17						
상위 10개 매체 합계	244건 (총 1,288건)		188건 (총 935건)		253건 (총 1,291건)		264건 (총 1,239건)	
상위 10개 매체 비율	18.9%		20.1%		19.6%		21.3%	

시정권고 내용의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514건으로 총 41.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생활 침해 위반 비중은 2020년 188건(20.1%), 2021년 517건(40%)으로 3년 연속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기사형 광고 위반이 2022년 209건(16.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살 관련 보도 108건(8.7%), 왜곡·자극적인 기사 제목 59건(4.8%), 범죄사건 보도 56건(4.5%), 신고자 등 보호 위반 52건(4.2%), 차별 금지 50건(4.0%) 순서로 나타났다.

2022년 시정권고를 개인적 법익 침해와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 보면 개인적 법익 침해는 총 674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고, 사회적 법익 침해는 모두 565건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하여 개인적 법익 침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표 2〉에서와 같이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주 가운데 '사생활 침해 등'이 514건으로 76.3%를 차지해 가장 많은 침해유형이었고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법익 침해가 56건으로 8.3%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은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을 보여주었다.

〈표 2〉 2022년 개인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빈도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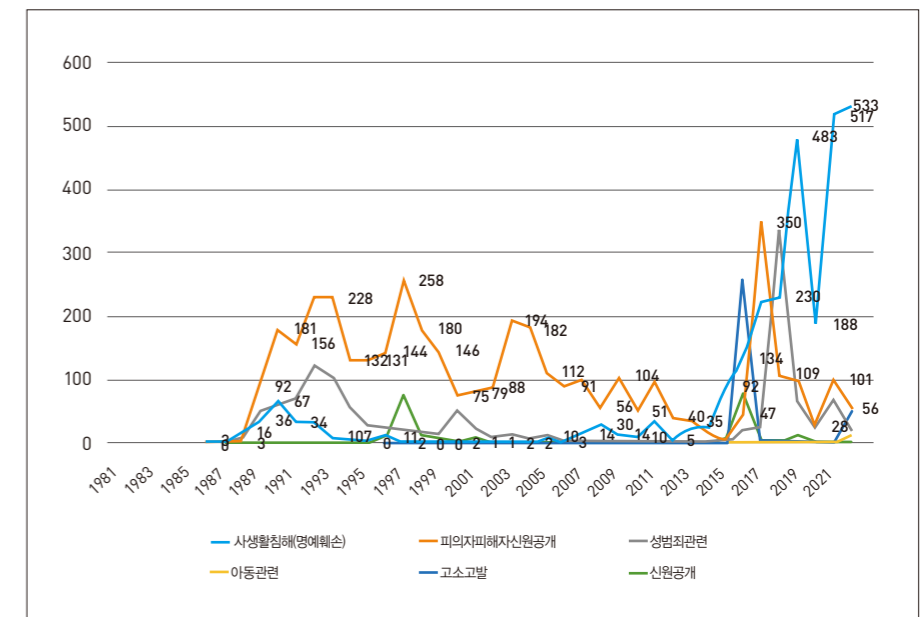
단위: 건수

항목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 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 학대 사건 보도	신고자 등 보호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합계
빈도	514	19	56	0	0	21	0	12	52	0	0	674
비율	76.3%	2.8%	8.3%	0.0%	0.0%	3.1%	0.0%	1.8%	7.7%	0.0%	0.0%	100%

〈그림 3〉과 같이 시계열적으로 개인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1981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적 법익 침해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까지는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와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 등 '신원공개' 관련 개인적 법익 침해가 많았던 반면, 2015년 이후에는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형태의 개인적 법익 침해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나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와 같은 '성범죄' 관련 개인적 법익 침해는 2018년 최고점 이후 지속적인 시정권고 효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개인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빈도(1981년~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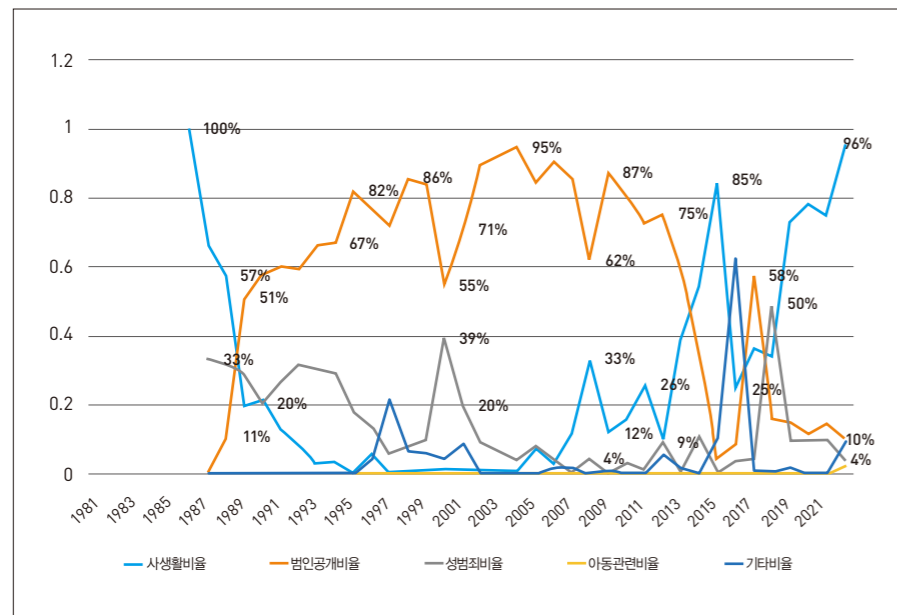
단위: 건수



〈그림 4〉에서와 같이 개인적 법익 침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비율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범인 신상공개와 같은 '신원공개'의 경우 2011년까지 침해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 침해유형이 2012년 이후 급격히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특정 개인 법익 침해유형에 대한 시정권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익 침해유형 비율이 많이 감소했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도 초반기에는 비율이 높았으나 지속적인 시정권고 효과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그 비율과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시정권고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관련 시정권고는 2001년과 2018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시정권고 효과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다. 비록 시정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조치이지만 지속적으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법익 침해가 크게 감소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림 4〉 개인적 법익 침해유형별 구성 비율(1981년~2022년)

단위: 비율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총 565건의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가운데 가장 많은 법익 침해는 기사형광고(37%)로 나타났다. 자살관련 보도(19.1%)와 기사제목(10.4%) 관련 시정권고가 그 뒤를 이었다.

〈표 3〉 2022년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빈도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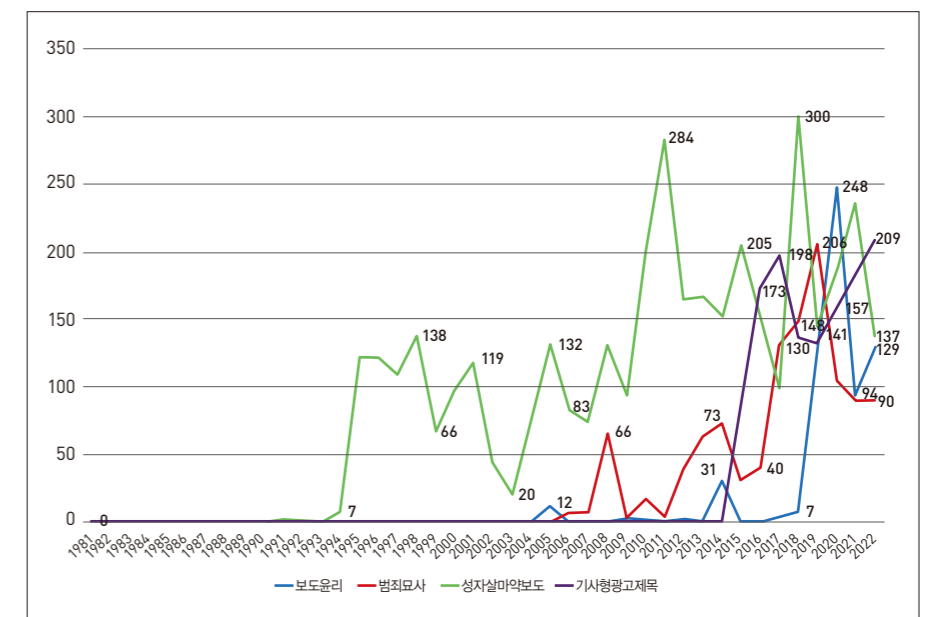
단위: 건수

항목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음란 포악 잔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기사형 광고	공중 도덕 및 사회 윤리 침해	기타	합계
빈도	0	50	20	27	14	21	108	8	16	33	0	59	0	0	565
비율	0.0%	8.8%	3.5%	4.8%	2.5%	3.7%	19.1%	1.4%	2.8%	5.8%	0.0%	10.4%	0.0%	0.0%	100%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연도별 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1981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 법익 침해 경향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성·자살·마약 관련 침해 보도가 증가하다 2019년 300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사형 광고 관련 사회적 침해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묘사 관련 사회적 침해 보도는 2019년 206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5〉 언론중재위원회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그래프: (1981년~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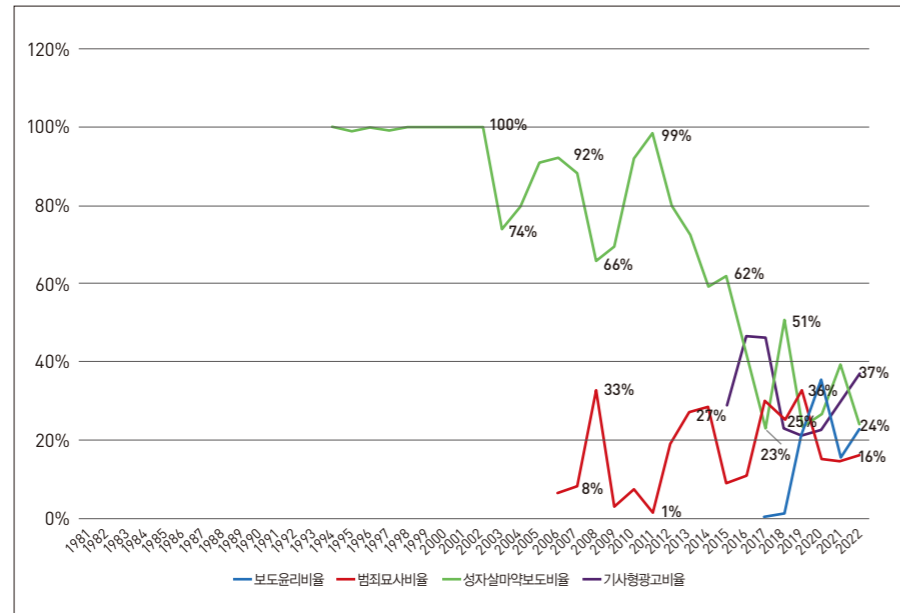
단위: 건수



〈그림 6〉과 같이 사회적 법익 침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비율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성·자살·마약 관련 보도'로 인한 비율이 2011년까지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 침해유형이 2012년 이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자살 관련 보도'나 '마약 및 약물 관련 보도'는 지속적인 시정권고로 인해 해당 법익 침해 유형 비율이 많이 감소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수법 상세묘사 보도' 항목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2월부터 신설된 기사 형태의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기사형 광고' 관련 사회적 법익 침해 비율은 다소 주춤했다가 경제 상황의 악화로 크게 증가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사회적 법익 침해 유형별 구성비율 그래프(1981년~2022년)

단위: 비율



나. 2022년 시정권고 수용률 분석

2022년도에 주목할 만한 시정권고 통계로 시정권고 수용률의 약진을 들 수 있다. 2022년 시정권고를 결정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인 수용률은 67.8%로 나타나 수용률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4〉와 같이 2019년 52.8% 비율로 시작한 수용률은 해가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22년은 수용률을 산정하기 시작한 2019년 대비 15% 상승하였고, 전년도인 2021년과 비교하여도 4.1% 상승한 수치이다. 이 같은 수치는 비록 시정권고 제도가 권고사항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권고 내용의 합리성으로 인해 해당 언론사가 그 취지를 수용하여 관련 기사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2년 시정권고를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 기사 가운데 39.7%인 462건이 수정되었고 28.1%인 327건이 삭제되었다.

〈표 4〉 시정권고 수용빈도 및 비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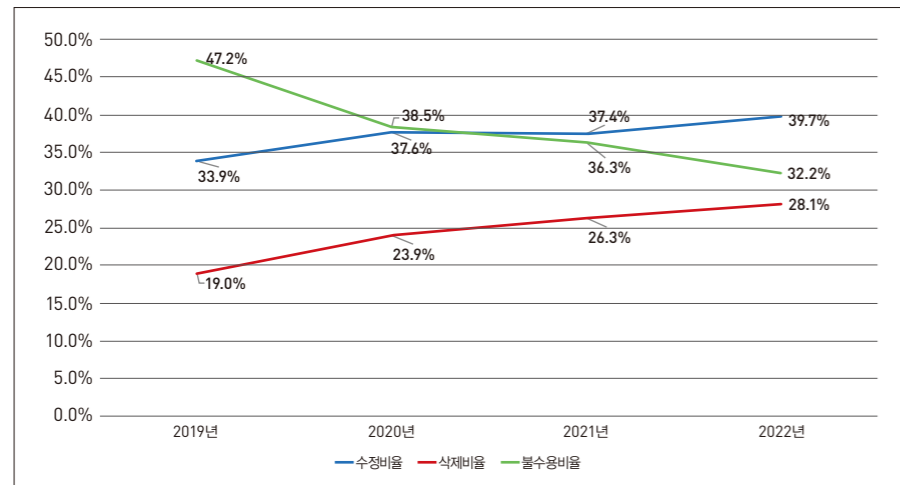
()는 비율

결정회차	수용여부	수용		불수용	합계
		수정	삭제		
2019년 (9차~12차)		125 (33.9)	70 (19.0)	174 (47.2)	369 (100)
		195 (52.8)			
2020년		320 (37.6)	203 (23.9)	327 (38.5)	850 (100)
		523 (61.5)			
2021년		466 (37.4)	327 (26.3)	452 (36.3)	1,245 (100)
		793 (63.7)			
2022년		462 (39.7)	327 (28.1)	375 (32.2)	1,164 (100)
		789 (67.8)			

* 각 연도별 전체 합계와 시정권고 수용률의 합계 수치가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수용 수치는 추후 수정과 삭제가 가능한 뉴스통신이나 인터넷신문과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를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수용률 가운데 기사 수정비율은 2019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후 2022년 39.7%로 4년 전과 비교해 5.8% 증가하여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기사 삭제 비율은 2019년 19%에서 2022년 28.1%로 4년 동안 9.1%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불수용 비율은 2019년 47.2%에서 2022년 32.2%로 15%나 감소하였다.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권고적 효력에도 불구하고 추후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많은 언론사들이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기본 취지를 수용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기사 삭제 비율이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 침해가 크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그림 7〉 시정권고 수용률 수정, 삭제, 불수용 비율 추세 그래프(2019년 9월~2022년) 단위: 비율



다. 심의기준 조항 개정

2022년은 시정권고 심의 제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정권고 심의기준'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무분별한 언론보도로부터 개인의 권익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6월에는 아동 관련 범죄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여 가정폭력 사건 관련 보도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반영하여 기존 심의기준 제7조를 보완, 가정폭력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자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 또한 기존 '성폭력사건'을 '성폭력범죄사건'으로 용어를 개정함으로써 용어를 통일하고 보다 다양한 사안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정부광고 핵심지표 적용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1월부터 정부광고 집행을 위한 지표로 적용하는 언론사 시정권고 건수가 2023년부터는 정부광고 핵심지표로 확대 적용된다. 2023년 하반기부터 방송 등

4) 개정된 내용은 제7조(가정폭력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2항). <신설 2022.5.25.> ② 언론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사소송법 제10조). <개정 2022.5.25.> 등이다.

기타 매체에 적용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영되는 지표는 신뢰성(사회적 책임)으로, 3분위로 구분하여 언중위의 직권조정결정(정정보도) 건수와 시정권고 건수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조정성립과 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는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시정권고는 100점 만점 가운데 20% 비중에 해당하고, 신뢰성 항목 40점 가운데 50%에 해당한다. 핵심지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시정권고의 효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마치면서

2022년 언중위 시정권고 제도의 운용 성과로는, 이 제도를 통해 언론사나 기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이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시정권고 결정에 따른 기사 수정이나 삭제를 나타내는 수용률이 6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시정권고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의 운영 방식이나 시정 권고 내용에 대한 수용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언중위 시정권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적절히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제도의 운용 방식과 시정 권고 내용의 합리적 수용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간신문에 종사하는 30년차 중견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언중위의 시정권고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예전에는 ‘인터넷에 올리려고 기사를 쓴다’라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수익이 악화되고 이렇게 매체들이 막 양산이 되면서 연예 기사 한 건이 정말 100건의 좋은 기사를 다 잡아먹는 이런 현실 속에서 누구도 그것을 제어를 못하니까 그런 기사들을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한국 언론이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확한 (문제를) 지적해 주고 정도를 가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러한 차원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언중위의 시정권고는 예방차원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30년차 기자)

언중위의 시정권고 제도는,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법익을 보호하는 공적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역할을 균형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